



대구지방국세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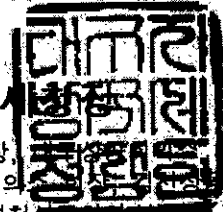
제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홍보 협조

1.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19. 12. 5.(목)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기한 내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안내내용 및 계획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대구지방국세청



수신자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영주상공회의소 회장,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국세조사관

안성덕

팀장

이동일

법인납세과장

전결 2019. 11. 6.

조승현

협조자

시행 법인납세과-600

(2019. 11. 6.)

접수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 <http://www.nts.go.kr>

전화번호 053 661 7465

팩스번호 050 31155757

/ asd2121@nts.go.kr

/ 비공개(6)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 '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8사업연도('18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

'18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 ~ 1천5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세정지원 내용

-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9. 12. 05.(목)